

제 442 호

1974. 4. 15.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 백 4

책 임 : 문화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보

차

례

◎ 조례

제 831 호 : 서울특별시구·옹·장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3
제 832 호 : 서울특별시별 경비지방공무원회임위에 관한 조례	3
제 833 호 : 서울특별시립 세마을 사회복지관설치조례에 대한 조례	4
제 834 호 : 서울특별시 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4
제 835 호 : 서울특별시가축시장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4
제 836 호 : 서울특별시 근로자 회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5
제 837 호 : 서울특별시 일 부녀부자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5
제 838 호 :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6
제 839 호 : 서울특별시 주택사업 비품·설비설치조례	7
제 840 호 : 서울특별시 계계 발사업 비품·설비설치조례	9
제 841 호 : 서울특별시 지하철 본부설치조례	10

◎ 규칙

제 1350호 : 서울특별시 공원관리사무소지 재충개정규칙	11
제 1351호 : 서울특별시 등치계 중개경규칙	13
제 1352호 : 서울특별시 우편지사부설치조례 중개정규칙	13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입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식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1353 호 : 서울특별시립 가축·시장직 체중개정 규칙	13
제 1354 호 : 서울특별시립 보전 소직제 중개정 규칙	14
제 1355 호 : 서울특별시립 아동 상담소직제 중개정 규칙	14
제 1356 호 : 서울특별시립 묘지관리 사무소직제	15
제 1357 호 : 서울특별시립 병원 직제 중개정 규칙	15
제 1358 호 : 서울특별시수도 사업소직제 중개정 규칙	16
제 1359 호 : 서울특별시립 근로자 회관직제 중개정 규칙	18
제 1360 호 : 서울특별시립 부녀복지관 직제 중개정 규칙	18
제 1361 호 :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소직제 중개정 규칙	18
◎ 고 시	
제 41 호 : 도시계획시설 (광장) 지적승인	21
제 42 호 : 도시계획 사업 (지하차도) 실시계획 변경인가	21
◎ 공 고	
제 68호 : 서울특별시 장적인경신공고	25
◎ 사 명	25

조 레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구
출장소설치조례에 개정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4. 4. 15.

⑤ 서울특별시 조례 제831호

서울특별시구, 출장소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구, 출장소 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출장소에 종무과, 시민과, 세무과, 청소과(운영출장소에 한함), 산업과, 건설과(운영출장소제외), 토목과(운영출장소에 한함), 건축과를 두되,
총무과장, 시민과장, 세무과장, 청소과
장, 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과장, 토목과장은 지방보통기사로,
건축과장은 지방건축기사로 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개정한 서
울특별시 행정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4. 4. 15

서울특별시장

⑥ 서울특별시조례 제 832 호

서울특별시 행정적 지방공무원
의 범위에 관한조례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
원법 제 2조 제 2항 제 2호의 규정
에 의하여 행정적 공무원의 범위
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행정적 지방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 3조(행정적 지방공무원의 지정)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행정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1. 아동상담소의 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28-4 제 442호

시

보

1974.4.15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립 새마을사회복지관 설치조례 폐지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1974.4.15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조례제 833호

서울특별시립새마을사회복지관
설치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 718호(1972.8.
9) 서울특별시립 새마을사회복지관 설
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4. 4. 15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조례제 834호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설
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조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장은 3급율류인 일반직지방공·
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어린이대공
원관리사무소장은 3급감류인 일반
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립가축시장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1974. 4.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조례제 835호

서울특별시 가축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가축시장 설치조례를 다
음과같이 개정한다.

제 3조 제 2항중 「시장」을 「마을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으로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근로자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아래에 공포한다.</p>	<p>제 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설치) 무의무탁한 부녀자의 신원보호와 영세근로여성의 자활독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조성과 가정복지 및 지역사회 부녀자 계통지도동부녀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이하 "부녀복지관"이라 한다)을 둔다.</p>
<p>1974. 4. 15 서울특별시장</p>	<p>제 2 조 제 1 호 중 "근우회관"을 "성동부녀복지관"으로, 하고 동조 제 2 호 중 "양지회관"을 "동대문부녀복지관"으로 한다.</p>
<p>◎ 서울특별시 조례 제 836 호</p> <p>서울특별시립근로자회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 4 조 제 1 항 제 1 호 중 "시장"을 "복지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으로 한다.</p>
<p>제 10 조 제 2 항 중 "시장"을 "회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으로 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부 칙</p>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1974. 4. 15 서울특별시장</p>	<p>부 칙</p>
<p>◎ 서울특별시 조례 제 837 호</p> <p>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p>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1974. 4. 15 서울특별시장</p>

② 서울특별시 제 838 호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설치조례 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 (명칭 및 위치) ① 수도사업소, 수
도관리사업소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조에는 1974년 5월 1일부터
수원지 사무소의 명칭은 별표와 같다 시행한다.

<별표> 수도사업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

1. 수도사업소 수도관리사업소 명칭 및 관할구역

사업소의 명칭	관할구역
종로구 수도사업소	종로구 일원
중구 수도사업소	중구 일원
동대문구 수도사업소	동대문구 일원
성동구 수도사업소	성동구 일원
성북구 수도사업소	성북구 일원
도봉구 수도사업소	도봉구 일원
서대문구 수도사업소	서대문구 일원
마포구 수도사업소	마포구 일원
용산구 수도사업소	용산구 일원
영등포구 수도사업소	영등포구 일원
관악구 수도사업소	관악구 일원
수도관리사업소	내·외 일원

2. 수원지 사무소 명칭

수도수원지사무소, 노량진수원지사무소, 구의수원지사무소, 보광동수원지사무소
영등포수원지사무소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주택사업비특별회계 설치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4년 4월 15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839 호

서울특별시 주택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4조 및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 공급 및
주택개량사업의 자금조달과 관리를
통해 관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
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설치) 이 사업을 효율적으
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주
택사업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 3 조(회계구분) 국민주택사업 특
별회계와 주택개량사업 특별회계는

따로 운영한다.

제 4 조(회계년도) 이 회계의 회계
년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 2 장 국민주택사업

제 5 조(세입) 이 회계(국민주택사
업)의 세입은 정부의 보조금 및
대부금, 한국주택은행(이하『주택은
행』이라 한다)으로 부터의 차입
금, 입주자로 부터 상환받는 할부
금 및 입주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 수익금과 세작대금 등으로 충
당한다.

제 6 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3. 국민주택 단지내의 부대 및
복리시설 건설
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
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
5. 다른 회계로 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차입금에 대한 상환
6. 국민주택의 재산관리 및 사무관리
7.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제 3 장 주택개량사업

제 7 조 (세입) 이 회계(주택개량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보조금 및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주택개량 측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보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부터의 수입금 및 소관재산의 사용수익금과 매각 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8 조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주택개량 지구내의 택지조성 및 공공시설 건설
2. 불량주택지구 재개발사업을 위한 축량
3.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
4. 타회계로 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차입금에 대한 상환
5. 소관재산의 관리 및 사무관리
6. 기타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 사업에 필요할 경비

제 4 장 보 칙

제 9 조 (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재원) 입주자로 부터 할부금 상환이 부진하여 주택은행에 상환할 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연체없이 주택은행에 상환한다.

제 10 조 (할부금의 수납) ① 입주자로부터의 할부금 수납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한다.

② 전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 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이자액을 가산 징수한다.

제 11 조 (용자금의 일시상환) ① 국민주택사업의 경우 입주자는 상환기일 종료전에 용자금 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상환액은 즉시 주택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12 조 (관리사무비) ① 국민주택사업의 경우 부대 및 부지시설의 관리와 사무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리사무비를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1. 아파트 : 가구당 월 할부금의

3%이내

2. 단독주택: 가구당 월 할부금의
3%이내3. 연립주택: 가구당 월 할부금의
3%이내

⑦ 전향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관리사무비는 국민주택과 부대 및 부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무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13조 (재해보험료) ① 국민주택사업
2.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건물의 입주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전항이의의 주택에 대하여는 시장이 주택은행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준비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주택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주택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 117호(57.2.1) 서울특별시주택비밀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비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4년 4월 15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840호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비
특별회계설치조례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시가지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개발사업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대지비각수입과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전조의 계원으로 충당한다.

제 4조 (宗旨) 이 회계운영에 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8-10-5 제 442호

서

1974. 4. 15.

본부총리의 승인을 얻어 경영한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설치조례를 이해
옹포한다.

1974년 4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서울특별시조례제 841호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설치조례

제 1 조 (목적) 서울특별시지하철의

건설과 동 운수사업의 경영을 위
하여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지하
철본부(이하 「지하철본부」라 한
다)를 둔다.

제 2 조 (위치) 지하철본부의 위치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 3 조 (본부장) ①지하철본부에 본부
장 1인을 두며 본부장은 지방시설
기감,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공업기
감으로 보한다.

②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지
하철의 운영과 지하철본부의 사무
를 관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4 조 (조직) ①본부장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본부장直属 운영담당
관과 기술담당관 각 1인을 두며
운영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기술담
당관은 전방공업부기감 또는 지방
시설부기감으로 보한다.

②운영담당관일에 관리과, 경리과 및
운수과를 두며 기술담당관일에 공
무과, 건설과, 전차과와 철도과를
둔다.

③관리과장, 경리과장 및 운수과장
은 지방서기관으로 공무과장은 지
방건축기정 또는 지방토목기정으로
건설과장은 지방토목기정으로, 전차
과장은 지방전기기정, 또는 지방전
기기정으로 철도과장은 철도전기기
정으로 보한다.

④과의 분장사무 기타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5 조 (공무원의 정원) 지하철본부
에 두는 공무원과 정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조 (직무대리) ①본부장이 사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본부장과 운영담당관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술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현업기관) ① 지하철본부의 사무를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역과 사무소 기타 필요한 현업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현업기관의 명칭, 위치, 분장사무 및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8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조례제 609호(70.3.17)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직제충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년 4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350 호

서울특별시 공원관리
사무소직제충 개정규칙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직제충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을 지방서기관으로, 북악공원관리사무소장과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림기관으로 보한다.

제 4 조의 2 를 삭제한다.

제 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 조 (기술담당관) ①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에 기술담당관 1인을 두고, 기술담당관은 지방농립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술담당관은 사무소내의 기술사무에 대하여 종합조정하고 소장을 보좌한다.

제 6 조 내지 제 7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 조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의 하부기구) ① 사무소에 서무제, 운영제, 관리 1제 및 관리 2제를 두고 서무제장과 운영제장은 지방행정주사로, 관리

<p>1. 제작은 지방농림기사로, 관리 2 계 장은 지방수의사로 보한다.</p> <p>②사무소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서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문서, 확인 및 기밀 나. 인사, 예산, 회계 및 용도 다. 물품장비의 관리 라. 대표, 수표 마. 공원내 출입의 통제와 경비 바. 공원내 청소와 미화 사. 다른 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p>2. 운영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원운영의 종합계획 나. 공원내시설의 운영 및 운영 의 통제 다. 공원내 질서의 유지 라. 공원이용자에 대한 안내, 공 보와 책의 제공 마. 공원내 출입자의 보호, 간호 및 미야의 수용보호 	<p>3. 관리 1 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원개발의 종합계획 나. 공원시설의 설계, 시공감독과 유지관리 다. 수목 및 잔디의 식재와 유지보호 라. 기계, 전기설비의 사설 및 유지보수 마. 식물원, 헌보장의 관리 <p>4. 관리 2 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동물원의 운영 나. 동물의 사육보호 다. 농물방역 라. 동물방사원의 관리 마. 기타 공원내 농물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사항 <p>제 7 조 (직무대행) 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어 린이대공원 관리사무소는 기술담당 관이, 남산 및 북악공원 관리사무소 는 관리계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	--

<p>서울특별시 동작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p> <p>서울특별시장 1974년 4월 15일</p> <p>◎ 서울특별시 규칙 제 1351 호</p> <p>서울특별시 동작제중 개정규칙</p> <p>서울특별시 동작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 2조제 1항중 「동에 법정직공무원」을 「동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법정직공무원」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197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서울특별시 수원지사무소직제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4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장</p> <p>◎ 서울특별시 규칙 제 1352 호</p> <p>서울특별시 수원지사무소 직제중 개정규칙</p> <p>서울특별시 수원지사무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 2조중 「사무소」를 「보조수원지사무소」로 한다.</p> <p>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별표 보조수원지사무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미아리 보조수원지사무소 서울특별시 불광동 보조수원지사무소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197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서울특별시 탕가축시장 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4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장</p> <p>◎ 서울특별시 규칙 제 1353 호</p> <p>서울특별시 탕가축시장직제중개정규칙</p> <p>서울특별시립 가축시장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 2조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시장에 장장을 두되 상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	---

28-14 제 442 호

시

보

1974. 4. 15

제 3 조 중 「시장」 을 「가축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 보건소직제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년 4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⑤ 서울특별시 규칙 제 1354 호

서울특별시립보건소직제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립보건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영등포구보건소」 관악지소 부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직제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년 4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⑥ 서울특별시 규칙 제 1355 호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직제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조(소장등) ① 아동상담소에 소장 및 수석 아동복지지도원을 둔다.
② 소장은 사회사업전문가인 3급을 포함한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수석 아동복지지도원은 아동복지지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상담소 운영에 관한 계반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⑤ 수석 아동복지지도원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조 중 「부소장」 을 「수석 아동복지지도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442 호 시 보 1974. 4. 15 28-15

서울특별시립묘지관리사무소직제를 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

1974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356 호

서울특별시립묘지관리사무소직제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묘지관리사무소(이하 「묘지관리사무소」라 한다)의 조직과 관장사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직무) ① 묘지관리사무소는 다음 사항을 관掌한다.

1. 묘지제도 개선

2. 묘지 운영 및 관리

3. 묘지사무에 대한 종합조정

4. 각 묘지관리사무소지소의 지휘감독

② 지소는 관할지역 묘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掌한다.

제 3 조 (소장) ① 소장은 지방행정주사제 또는 지방보건기사로 보한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4 조 (공무원) 소장이 외에 두는 공무원과 각 묘지관리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병원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357 호

서울특별시립병원직제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립병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제 4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로 각과(科)의 과장을 전문의 임시직으로 보할 수 있다.

제 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 조 (서무과) ① 서무과에 서무제와 원무제를 두고 계장은 각각 지방 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서무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28-16 제 442 호

시 보

1974.4.15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무제

- 가. 기밀인사에 관한 사항
- 나. 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회계 및 용도에 관한 사항
- 라. 수수료 사용료 및 진료비수납
- 마. 청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바. 기타 원내 타파(牒)·과(科) 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원무제

- 가. 환자의 입·퇴원 및 외래환자에 대한 업무
- 나. 진찰권 및 진단서발급
- 다. 수수료 사용료 및 진료비조정
- 라. 환자의 급양 및 영양에 관한 사항
- 마. 영아수용·결연 및 전원에 관한 사항(아동병원에 한함)
- 바. 시체실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직제중 개정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1974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장

⑤서울특별시 규칙 제 1358 호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직제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 2조를 삭제 한다.
제 5조제 1항중 단서와 제 2항 및
제 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종로구·중구·마포구 및 용
산구수도사업소에는 공무제 1제와
공무제 2제를 두지 아니하고 공무
제만을 둔다.

②관리제장·파장제 1제장 및 파장
제 2제장은 지방행정주사로, 공무제
장·공무제 1제장 및 공무제 2제장
은 지방토목기사로 보한다.

③수도사업소의 계별분장사무는 다
음 각호와 같다. 다만 파장제 1제
파장제 2제의 분장사무와 공무제 1제
공무제 2제의 분장사무는 통일하되
지구별로 분장한다.

- 1. 관리제
가. 문서관리 및 기밀
- 나. 교육 및 훈련
- 다. 청중 단속·당직
- 라. 인사복무·급여 및 후생
- 마. 회계 및 용도
- 바. 도서 및 비품보관
- 사. 세입금의 수납정리 및 짐수입처리
- 야. 세입·통계(종합분)
- 자. 통화조사의 수불 및 보관

차. 금수조례 위반자처분	가. 예금수관 및 그 부속설비
카. 납부월중 발급	유지관리
타. 차량 유지관리	나. 소액수지펌프장 유지관리
파. 상수도 시공업자의 지도감독	다. 금수탑 및 소화전 방화저수
하. 소내업무 전반에 걸친 조사업무	조. 유지관리
거. 타제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라. 금수장치의 신설개량 및 철 거공사
2. 과정제 (과정제 1제, 과정제 2제)	마. 예수계 금수원확장 및 통합 개량공사
가. 금수사용료의 과정계획 및 통제	바. 양수기의 편한 사용
나. 수도천관리	사. 예수지관 및 금수장치의 수 수방지와 수선공사 (부속설비 포함)
다. 금수사용량 점검	아. 제수면조절 및 특별금수
라. 제사용료 수수료 및 잡수입 과정	자. 수압조사 금수실태조사 및 누수방지
마. 양수기사용료 및 등 예작대 과정	차. 특별가입시설의 운영
바. 금수조례위반자 처벌보고	카. 금수대 편한 민원처리
사. 금수증지 폐전 및 동해재	타. 금수 및 차동공사의 통제 (총괄통제는 공무제 1제)
아. 공설공용 수전관리	파. 부정금수공사단속 및 발생 방지
자. 가산금 과정	제 7조제 2항중 「서무제장은 지방행 정주사로, 차제제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제경주사」를 「서무제장및 차제제장은 지방행정주사」로 한데 별표를 삭제한다.
차. 과정통제 (총괄통제는 과정제 1제)	부 칙
가. 금수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징 수처분 및 재산압류	이 규칙은 1974년 5월 1일부터 시 행한다.
타. 수납소인 및 수납부관의	
파. 공과금 교부청구	
하. 과오납금 충당금 환불	
거. 금수사용료판정, 민원 및 이의 신청처리	
3. 공무제 (공무제 1제, 총무제 2제)	

28-18 제 442 호

시

보

1974. 4. 15

서울특별시립근로자회관칙제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4. 4. 15

◎ 서울특별시 규칙제 1359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회관칙제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립근로자회관칙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제 2 항중 「시장」을 「회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칙제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4. 4. 15.

◎ 서울특별시 규칙제 1360호

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칙제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칙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관장은 복지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의 명을 받아 관운영에 관한 재판사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수용부녀를 지도 보호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소칙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4. 4. 15.

◎ 서울특별시 규칙제 1361호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소칙제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소칙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조(조직) 사업소에 서무과, 과정과, 생산과와 공무과를 두고 서무과장과 과장과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생산과장은 지방화물기과 또는 지방화물기과로 보한다.

제 4 조를 제 8 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 8 조 (공장장) ① 각 가스제조공장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공장장을 둔다. 남부공장의 공장장은 생산계장이 겸임하고, 용산 및 여의도공장의 공장장은 소속공무원 중 지방행정주사로 소장이 임명한다.

② 용산 및 여의도공장의 공장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당해 공장에 배치된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공장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운영(파장사무 및 안전관리업무를 포함)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5 조를 제 9 조로 하며, 제 6 조를 제 10 조로 하고, 동조중 「관리계장」은 「서무과장」으로 한다.

제 4 조 내지 제 7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4 조 (서무과) ① 서무과에 서무계와 관리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서무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무계

- 가. 사업소 전반행정의 통합조정
- 나. 인사부무, 급여 및 후생
- 다. 문서편집 및 기밀
- 라. 기획 예산회계 및 자재의 구입

마. 소내 타과·타제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관리계

- 가. 가스사업의 확장, 품질개선
- 나. 가스사업의 개선과 원가제산
- 다. 가스 수요가조사와 소요량 판단

- 라. 차량 및 청사 유지관리
- 마. 각종 자재 및 비품의 출납
- 바. 가스공급조례 위반처리

제 5 조 (과장과) ① 과장과에 과장계 1계와 과장 2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과장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장 1계

- 가. 가스전 관리
- 나. 가스사용량검침 및 조정징수
- 다. 잠수임 과정
- 라. 가스공급조례위반자 적발보고
- 마. 각종 수수료 및 가산금의 과정

28-20 제 442 호

시

보 1974.4.15

<p>바. 영수조서의 수불(충팔)</p> <p>사. 과오납의 정리</p> <p>아. 세입통계(충팔)</p> <p>자. 수납부의 관리 및 수납소인</p> <p>차. 가스사용자의 명의변경 및 이의신청처리</p> <p>카. 과내 타계 주판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과정 2계</p> <p>가. 가스공급증지해제 및 폐전 처리</p> <p>나. 과년도 체납분 징수</p> <p>다. 체납처분</p> <p>제 6 조 (생산과) ①생산과에 생산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화공기사로 보한다.</p> <p>②생산과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생산계</p> <p>가. 가스생산·출합제작</p> <p>나. 유가스생산 조업 및 공급</p> <p>다. 유가스 프렐트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p> <p>라. 가스공장의 건설</p> <p>마. 가스발생시설의 연구개발</p> <p>바. 생산가스의 열량분석 및 원료분석</p> <p>사. 용산 및 여의도공장 지도감독</p>	<p>아. 액화석유가스의 생산조업 및 공급</p> <p>자. 액화석유가스 발생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p> <p>차. 가스미터의 성능검사 및 수리</p> <p>카. 과내 타계 주판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제 7 조 (공무과) ①공무과에 공무 1계와 공무 2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토목기사 또는 지방화공기사로 보한다.</p> <p>②공무과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공무 1계</p> <p>가. 가스배관시설의 안전관리</p> <p>나. 가정관 안전관리의 지도계동</p> <p>다. 가사연소장치(기구)의 연구개발</p> <p>라. 가스배관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보수와 설비개량</p> <p>마. 가스배관망도 유지관리</p> <p>바. 가스미터의 교체</p> <p>사. 가스배관지역의 민원 및 사고처리</p> <p>아. 과내 타계 주판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공무 2계</p> <p>가. 가스배관계획의 조사측량</p> <p>나. 가스배관의 설계 시공감독</p> <p>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	---

도시계획

◎ 서울특별시 고시 제 41 호

도시계획사업(봉장)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봉장)의
지적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13조와 건설부고시제
123호(73.4.4)의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 조치(봉장)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와 성동구, 청호운동
소 시민봉사관에 비치하여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4. 16.

서 울 특 별 시 장

구분	번호	명 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설	41	찰현봉장	성동구 신천동	32,000	강변7로 종로 1-29교점
	42	석촌봉장	성동구 석촌동	74,500	봉로2-19호 종로1-29교점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출장소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 고시 제 42 호

도시계획사업(지하
차도) 실시계획변경인가

1. 건설부고시 제 361호(67.5.24)
로 결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
업(지하차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실시계획기간을 연장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제 25조와
동법제 26조 및 건설부고시제 123
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한강진
설사업소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
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28-22 제 442 호

시

보

1974. 4. 15.

이해 판례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4. 16.

서울특별시장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영등포구 영등포
동 1 가지 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영등포입체교차
로 (철도횡단지하차도) 시설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 폭 14 미터
연장 246 미터

4.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 차수 및 준공 예정년월일

1) 변경전 : 1973. 12. 10 ~ 1973. 12. 31

2) 변경 후 : 1973. 12. 10 ~ 1974. 6. 30.

(기간연기)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
자, 지번, 지목 및 천물조사, 소유
자와 소유권이 의의 판례인의 주소
성명 (별첨참조)

인 가 증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 1 가 지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영등포입체교차로 (철도횡단지하차도) 시설공사

3.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4. 인 가 번 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 42 호

5. 사업기간의 변경 : 변경전 : 73. 12. 10 ~ 73. 12. 31

변경후 : 73. 12. 10 ~ 74.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와
소유권이 의의 판례인의 명세 : 별첨

위와같이 아래조건을 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제 10조 첨부부고지
제 123 호 (73. 4. 4.) 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설계도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
시제회기간을 변경 인가함.

1974. 4. 16.

서울특별시장

인 가 조 전

1. 사업 실시 완료후 지체없이 사업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별첨 개략설계도(평면도)에 의하여 시공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별첨 도면은 한강건설사업소에 보관함.

제 442 호 시 보 1974. 4. 15. 24-23

토지 조서											
순위	소재지	분할 전 표시			분할 후 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판매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1	영동포1가	94-2	대	1,331.7	94-3	대	80.8	영동포동2가18	김정순	외 50 일	
2	"	61-1	"	10.5	61-3	"	5.6	"	53	박봉준	
3	"	61-2	"	10.5	61-4	"	6.9	"	53	이영호	
4	"	62	"	12.1	62-2	"	8.2	"	63	함덕근	
5	"	63	"	194.2	63-2	"	28.6	"	85	김광식 외 8 일	
6	"	96	"	135	96-2	"	22.8	신길동 182	최형운	외 7 일	
7	"	109	"	49.3	109-2	"	21.6	목산동 3	이복규	외 2 일	
8	"	105	"	97.5	105-2	"	31.7	영동포 1 가 93	조성규	외 5 일	
9	"	104	"	31.9	104-2	"	17.2	"	104 123	최명실 이천관	
10	"	103	"	35.8	103-2	"	15.8	둔애동 30-10	동양제과		
11	"	120-1	"	20.3	120-1	"	20.3	남대문 1 가 14	조홍은행		
12	"	120-2	"	100	120-4	"	8.3	"	"		
13	"	121	"	724	121-2	"	26.9	"	"		

물건 조서										
순위	소재자	지번	구조	총평수	수용 면적	소 . 윤 . 자			성명	
						주	소	성		
1	영동포동1가	94-3	(유유조)은 크리트예와조	(1) 51.78 (2) 51.12	15	당산동 4 가 1 외 2			김성준	
2	"	"	연화조 명우제	(1) 2.56 (2) 9.56	9	영동포동 1 가 94			최봉운	
3	"	"	목조와습	(1) 14.4 (2) 14.4	10	"			김승문	
4	"	"	"	(1) 8.5 (2) 7.5	10.3	"	94-2	이우율		
5	"	"	"	(1) 3.5 (2) 3.5	9.3	"	94-3	이화영		

28-24		제 42호		1973. 6. 15.	
등 위	노 개 지 자 번	구 조	총 면 적	수 용 면 적	소 재 소 지 성 면
(공지)					
7	영동포동1가 94-3	목조와습	(1) 19.2 (2) 19.2	14 14	영동포동1가 94-3 " " " "
8	" 61-3	목조와습	(1) 10.5	"	94-2 박봉호
9	" 61-4	"	(1) 10.5	"	" 이명호
10	" 62-2	"	(1) 10.4 (2) 10.4	10.7 10.7	63-3 한덕근
11	"	"	"	"	" "
12	" 63-2	"	(1) 8 (2) 8	8.7 8.7	63-2 김은분
13	" 63-2	"	(1) 8 (2) 8	8.7 8.7	" 김광식
14	" 63-2	"	(1) 8 (2) 8	8.7 8.7	" 김치중
15	" 121-2	철근콘크리트조	(1) 59 (2) 59	20 20	남대문로1가 14 조홍운행
16	" 120-1	목조스트레조	(1) 13	19	" "
17	" 120-4	일의조와습	(1) 25 (2) 25	8.0 8.0	" "
18	" 103-4	목조와습	(1) 15 (2) 15	15.8 15.8	도림동 49-14 유용선
20	" 104-2	연의조와습	(1) 19.44 (2) 11.78	18 18	영동포동1가 104-2 최영신 최영비
22	" 105-2	목조와습	(1) 23 (2) 8	11.98 7.98	105-2 최명진
27	" 105-2	"	(1) 19	22.8	" 한상복
28	" 109-2	"	(1) 11	22.8	109-2 "
(공지)					
31	" 109-2	"	(1) 3 (2) 3	5.9 5.9	109-1 백선비 최실판
32	" 96-2	"	(1) 9 (2) 9	5.4 5.4	96 이봉금
33	" 96-2	"	(1) 9 (2) 9	5.4 5.4	" 이봉영
34	" 96-2	"	(1) 23 (2) 17	9 9	영동포동1가 102-3 서민화

* 번역 : (1)... 1 층 (2)... 2 층

제 442 호

시

보 1974. 4. 15. 28-25

공 고

경신하였기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9 조에 의하여 이에 공고함.

◎ 서울특별시 공고제 68 호

1974. 4. 15.

서울특별시 장직인경신공고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의 직인을 확인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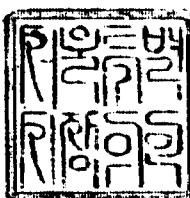
1. 경신사용일자 : 1974. 4. 17

제 3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2. 직인의 인명 :

서울특별시장의 직인

폐기직인

경신직인



사

령

김수진

◎ 1974. 4. 15.

지방화공기사보시보에 임함.

도시가스 지방화공기사
사업소 (공무제장) 황병주 1호봉을 급함.

도시가스사업소 공무과장 직무

토목시험소 근무를 명함.

대리를 명함.

이명국

도시가스 지방화공기사(생산
사업소 산체장직무대리) 안중근
지방보건연구사보시보에 임함.

도시가스사업소 생산과장 직무

1호봉을 급함.

대리를 명함.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28-26 제 442 호

시

보 1974.4.15.

유래 근	산업시설에 다른 장소를 비 및
지방전기 기사보시보에 입함.	안내) (74.4.15-74.5.26)
1 호봉을 급함.	세 정과 지적기사 흥기태
주택건설과 근무를 명함.	영동률장소 지적기사보 장행섭
백구현	국가공무원법제 73 조와 2. 제 1 항
지방전기 기사보시보에 입함.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
1 호봉을 급함.	위를 해제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 서기보 박향자
이근영	서민봉사실 노동청 전출을 명함.
지방전기 기사보시보에 입함.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행정서기 한선환
1 호봉을 급함.	부산시 전출을 명함.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김창문 ◎ 1974. 4. 16
지방전기 기사보시보에 입함.	충로구 지방행정 서기보 박주원
1 호봉을 급함.	시설관리과 근무를 명함.
지하철건설본부 근무를 명함.	충로구 지방행정 서기보 박청
충 구 지방행정	양석주 시설관리과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김진백 용산구 지방행정 서기보 하홍선
충로구 지방행정	김정칠 시설관리과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	이채규 영등포구 지방행정 서기보 이영철
운수 3 과 검사원	정봉상 시설관리과 근무를 명함.
보건행정과 식품위생	안일웅 공무원교육원 교수수부 지방서기관 이중권
행정파파전 근무를 명함.	도봉구 수도사업소 산설준비담당관 근무를 명함.
(통일주체국민회 의대의원)	

제 442 호 시 보 1974. 4. 15. 28-27

충 주 과 과 무 품 이 청 송 관악구수도사업소 신설준비담당관 근무를 영할.	도 시 가스사업소 서 지방행정기 이 중 복 성북구 근무를 영할. 도 시 가스사업소 서 지방행정기 죄용 출 이상재회원실 안전담당관 지방서기관 이 광하 관악구 근무를 영할. 산업국 연로과장직무대리에 임함. 성 북 구 지방서기관 김영수 서대문구 근무를 영할. 수도사업소 서 지방행정기 죄용 생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에 임함.
관악구부청장 지방행정기판 신성호 관악구 근무를 영할. 수도국연로과장 직무대리에 임함. 운수 1 과 사무관 원지연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영할. 이상재회원실 안전담당관 직무 대리에 임함. 서대문구 사무관 배상승 동대문구 서기보 지방행정기 죄용 생 성북구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에 임함.	마포구 지방행정기 인실수 마포구 수도사업소 지방행정기 김진귀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영할.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영할. 동대문구 서기보 지방행정기 죄용 생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영할. 경동포구 지방행정기 박광진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영할. 마포구 수도사업소 지방행정기 구창희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영할. 온평물장소 지방행정기 총석도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영할. 마포구 수도사업소 지방행정기 김준기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영할. 용산구 수도사업소 지방행정기 죄용 생 성북구 근무를 영할.
행정과 사무관 이희찬 관악구부청장 직무대리에 임함. 어린이대공원 지방행정기판 관리사무소장 사무관 최홍 어린이대공원 관리사무장 직무 대리에 임함. 수도국 경리과장 서기관 이홍순 지하철본부 경리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 1974. 4. 17	

28-28 1974.2.28.

서 울 특 찰

1974.4.15.

○ 1974.4.20.

경기도포양군 지방행정 오장식
서울특별시 진월을 영합.
지방행정서기에 입학.
9 호봉을 급합.
서대문구 (은평을장소) 근무를

영합.

경기도경상도 지방행정 진월을
서울특별시 경월을 영합.
지방행정서기에 입학.
9 호봉을 급합.
성북구 근무를 영합.

서 울 특 찰